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권한을 일부 위임

3. 주요내용

가.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) 신청 접수 및 등록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외 지자체장*을 추가(안 제22조제1항제1호)

*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8. 6. ~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지방해양수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제1호 권한 중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, 등록확인서의 발급으로 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변경등록”을 “변경등록 신청의 접수, 등록 및 변경등록, 등록확인서 발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<u>지방해양수산청장</u> 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해양수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제1호 권한 중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, 등록 확인서의 발급으로 한정)---</u> . -----.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<u>변경등록</u>	1. ----- <u>변경등록 신청의 접수, 등록 및 변경등록, 등록확인서 발급</u>
1의2. ~ 4. (생략)	1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65